

황현아 연구위원

요 약

-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판례도 분야별로 누적되고 있음
- 형사 판례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자동차사고와 동일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됨
 - 최근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므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음
- 행정 판례에서는 (i)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대상 여부 및 (ii) 교통법규 위반 상황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에도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의 결론은 엇갈리고 있음
 - 무면허,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상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음
- 민사 판례에서는 (i) 배터리 화재 사고 시 제조물책임 성립 여부, (ii)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 시 정부·지자체 책임 인정 여부, (iii) 전동킥보드 이용 사실이 통지의무 대상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 전동킥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소유자가 전동킥보드를 무단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음
 - 도로관리상 하자로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도로 관리 주체인 정부·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보험계약자 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전동킥보드 관련 판례 쟁점의 상당 부분은 전동킥보드의 성격을 자동차로 볼 것인지 자전거로 볼 것인지와 관련되는바, 향후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지급 여부 및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건강, 생계 및 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관련 판례도 분야별로 누적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¹⁾
 - 보행자 및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 배터리 화재 사고 등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는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빈발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최근 판례²⁾를 형사, 행정, 민사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판례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함



2. 형사 판례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됨
 - 특가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³⁾)
 - 이때 “자동차 등”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데(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됨⁴⁾
 - 다만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함께 묶어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여 자전거처럼 통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 등”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 중 상당수를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등 전동킥보드를 사실상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이처럼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등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다투어지는 것임

1)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23. 4. 6),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매년 급증”

2)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 외에도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전동킥보드인바, 본고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판례를 검토 대상으로 함

3) 일반적인 대인사고에 적용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음주·약물 운전으로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가 적용되어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4)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해석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됨

- 최근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상 사고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⁵⁾
 -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해석상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므로,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자동차 등(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음
 - 한편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를 묶어 “자전거 등”이라고 별도로 규율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처럼 규율하기 위한 입법 기술상의 편의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 또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⁶⁾을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짐
 - 특가법은 음주·약물 운전 외에 뺑소니(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3. 행정 판례

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여부

-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정지가 이루어짐
 -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이나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제4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징역, 벌금) 및 면허 취소·정지 등 제재가 가해짐
 -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매우 높은 수준의 징역 및 벌금을 가하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음주운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을 운전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음(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 반면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자동

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6)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예방하여 교통참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게 됨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정지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자동차 등”에 포함되고, 면허취소 규정은 벌칙 규정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정지되는 것임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들이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는 엇갈리고 있음

- 일부 하급심 판례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에 따른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도 절실하므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⁷⁾
- 반면 다른 하급심 판례에서는 ‘전동킥보드는 크기·무게·속도가 자동차보다는 자전거와 유사하고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현저히 낮으므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⁸⁾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⁹⁾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벌칙 규정과 면허취소 규정의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벌칙 규정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면허취소 규정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 전동킥보드의 크기·무게·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면허를 전부 취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에 의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면허취소뿐 아니라 벌칙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시 보험급여 인정 여부

○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및 산

7) 수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구단3289 판결(확정), 청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운전자의 항소 제기로 항소심 진행 중(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227))

8) 대상 판례 사안에서 운전자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며 차량을 이용한 영업 및 납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음주 상태에서 호프집에서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약 500m 정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였음

9)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구단10537 판결(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대구고등법원 2023누11789))

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제됨

-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대한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무면허, 음주, 기타 교통법규 위반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음주 등에 의한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이러한 공단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됨
-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음주·보도 침범 등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며,¹⁰⁾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¹¹⁾
- 한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무면허 및 신호위반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이나 신호위반이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근로복지공단은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및 신호위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법원은 무면허운전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고 신호위반 역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음¹²⁾
-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치료비 보상 공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임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2. 12. 15),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 건강보험 안돼...”

11) 광주지방법원 2023. 5. 15. 선고 2022구합13664 판결(위 사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임(광주고등법원 2023누10838))

12) 서울행정법원 2021. 7. 7. 선고 2020구단61488 판결(위 사건에 대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2022. 2. 12. 최종 확정됨(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누53261 판결))



4. 민사 판례

가. 배터리 화재 사고 시 제조물책임 인정 여부

- 최근 전동킥보드 배터리 충전 중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됨
 - 소방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2018년 5건에서 2022년 115건으로 23배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 발생하였으며 재산 피해 발생 규모도 5억 9,99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¹³⁾
-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이 추정되어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¹⁴⁾
 - 제조물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입증되어야 하나, 당해 제조물을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의 존재가 추정됨(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 법원은 화재 발생 장소에 전동킥보드 외 화재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다른 전기기계나 기구들이 없었고, 발화 당시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와 그 주변이 타고 있었으며,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팽창·천공·분출의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전동킥보드 화재가 제조물 결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반면 소유자가 전동킥보드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결함이 추정되지 않아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¹⁵⁾
 - 법원은 소유자가 임의로 전동킥보드를 개조하였고 그 개조작업이 배터리에 부담을 주거나 이상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¹⁶⁾ 당해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이상의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전동킥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임의 개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른 화재 원인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전동킥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은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13) 뉴시스(2023. 6. 19), “전동킥보드 화재 지난해 115건, 4년 새 20배↑... 원인은 ‘과충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5101433 판결(위 사건에 대해 피고 배터리 제조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7053 판결), 상고 제기되지 않아 2021. 12. 11. 확정됨)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가단5095392 판결(2021. 2. 9. 확정됨)

16) 판례 사안에서 전동킥보드 소유자는 배터리 장착 부위인 발판 옆에 LED조명을 설치하고, 방향지시 연동 후방 방향지시등 밝기를 조절하였으며, 전방라이트를 교체하였는데, 이러한 개조에는 배선 절단 및 재연결, 추가 감압장치 설치 및 회로기판 설치작업 등이 수반됨

나. 도로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도로관리상 하자나 안전시설 미비가 원인이 되어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법원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 자전거도로에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이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노면 콘크리트가 패여 있으며 맨홀 뚜껑 부분이 파여 있는 등 표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음¹⁷⁾
 -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상 4~5cm 정도의 단차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자전거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해당 도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음¹⁸⁾
 -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안전 장구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운전상 부주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되고 있음
- 자동차에 비해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상의 작은 하자에도 운전자 사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바, 향후 정부·지자체의 도로관리 수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다. 보험약관상 통지의무 대상 여부

-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통지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됨
 -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위험이 변경·증가한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상법 제652조 제1항)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사실은 대표적인 위험 변경·증가에 해당하는바, 대부분의 보험약관은 이러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 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 준하여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자전거 이용과 유사하게 보아 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됨
 - 보험약관에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이를 통지하도록 명시한 경우도 있으나, 과거에 작성된 보험약관의 경우 대부분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약관 해석 문제가 발생함
- 법원은 전동킥보드 이용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대법원은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통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음¹⁹⁾
 - 최근 하급심 법원도 보험약관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는 도로교통법상의 정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이용 시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과 동일하게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2. 10. 선고 2022가단58411 판결(피고 여수시가 항소 제기하여 항소심 진행 중(광주고등법원 2023나21329))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가단126492 판결(피고 아산시가 항소 제기하여 항소심 진행 중(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1868))

19)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21154 판결

통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음²⁰⁾

- 특히 약관상 통지의무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점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의 안전에 관한 위험성 측면에서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위험성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통지의무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사실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음²¹⁾

○ 금융감독원은 2020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바, 향후 이에 관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²²⁾

- 다만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 건이 다수 존재할 것이므로, 전동킥보드 이용이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임



5. 결어

○ 전동킥보드 관련 판례 사안의 주요쟁점 중 상당수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자동차로 볼 것인지 자전거로 볼 것인지와 관련되는데, 분쟁의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조항 중 일부 조항은 전동킥보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²³⁾ 통행방법 및 음주운전 벌칙 규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에 관해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나, 벌칙에 관해서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어 수범자들의 혼란 및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대상 여부, 운전면허 취소 대상 여부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건강, 생계 및 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법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일단 부상 치료를 받을 수는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²⁴⁾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합102592 판결(2023. 2. 21. 확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가합562808판결(2023. 2. 16. 확정)

2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7. 7),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

23) 예컨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 및 음주운전 금지(제44조) 조항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과로운전 금지(제45조), 공동위험행위 금지(제46조), 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3) 조항은 전동킥보드에 적용되지 않음

24)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담보 항목 중 운전자 자신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고의사고만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교통법규 위반은 면책사유나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음